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048호)
- 양정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488호)
- 김 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544호)
- 김성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581호)
-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589호)
- 전주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650호)

2021.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목 차

I . 개 요	1
【서삼석의원안】	1
【양정숙의원안】	3
【김 웅의원안】	5
【김성환의원안】	7
【오기형의원안】	9
【전주혜의원안】	11
II . 검토의견	12
1.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김성환의원안)	12
2. 우주청 신설(양정숙의원안)	16
3. 국가안전정보처 신설(김웅의원안)	20
4.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 (오기형의원안)	24
5. 농·어업통계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이관 (서삼석의원안)	28
6. 행정안전부장관의 당적 보유 금지(전주혜의원안)	33

I. 개 요

【서삼석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삼석의원 등 16인

나. 발의연월일 : 2021. 6. 24.

다. 회부연월일 : 2021. 6. 2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농업통계 사무가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된 후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관련 사무는 통계청에서 관장해오고 있음.

그런데 농업통계 등의 세부항목 종류가 축소되고 통계의 질적 저하와 부정확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농수산물의 특성상 그 생산과 관련된 통계에 대하여는 다른 분야의 통계보다 신속성·정확성이 한층 더 요구되므로 관련 사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계청이 관장하고 있던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사무를 농

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각각 이관하여 통계 사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9항).

【양정숙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양정숙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1. 7. 13.

다. 회부연월일 : 2021. 7. 1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아르테미스 우주플랫폼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우주 진출 기회가 열렸음. 우주는 더 이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고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이 되었음.

우주공간은 과학적 탐구나 상업적 이용대상에서 국방 등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이용대상으로 그 개발 목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세계 각국이 군사적·상업적 활용을 위한 우주개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케냐 짐바브웨 등도 우주투자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관급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및 각 부처의 우주개발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이와 같이 우주개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미흡한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우주개발사업 예산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부처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연구성과물 공유가 어려워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래서 우리도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주 정책을 조율하고 민·관·군을 총괄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함.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여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웅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웅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1. 7. 16.

다. 회부연월일 : 2021. 7.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 경찰은 독점적인 국내정보 수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 정보경찰은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는 직무규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불필요한 정보들이 대부분임.

특히,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보국 외근 정보관들의 전체 업무 중 ‘범죄첩보’ 작성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보경찰은 본연의 범죄첩보 수집 보다는 이외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함을 방증하고 있음.

이에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543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7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51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5호),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9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8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성환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성환의원 등 15인

나. 발의연월일 : 2021. 9. 15.

다. 회부연월일 : 2021. 9.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후핵연료는 그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지역 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그 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함. 따라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의 수립과 부지선정 및 공론화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기관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5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오기형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오기형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1. 9. 15.

다. 회부연월일 : 2021. 9. 16.

2. 제안이유

현재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두 기능에 대한 권한의 집중으로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해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수행함에 따라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시의적절하게 경제정책·외환정책과 국내 금융산업정책을 조율하기 곤란한 한계를 노출하는 실정임.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

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및 국내외 금융정책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금융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안 제27조).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전주혜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전주혜의원 등 20인

나. 발의연월일 : 2021. 9. 24.

다. 회부연월일 : 2021. 9.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등에서 선거·투표의 지원 사무 등 선거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인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이 될 경우,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 사무 관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 34조제3항 신설).

II. 검토의견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김성환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
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생략)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②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7. 「 <u>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u> 」 제6조에 따른 <u>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u>
7. ~ 8. (생략)	8. ~ 9. (현행 제7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③ ~ ⑩ (생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사용후핵연료는 그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그 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함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의 수립과 부지선정 및 공론화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적 행정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개요

- ▶ 성격 :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 구성 :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
 - 위원장은 정무직(국무총리 제청, 대통령 임명)
 - 4명(상임위원 포함)의 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4명의 위원은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 임기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
- ▶ 주요기능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매 5년),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관리시설 부지 선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 ▶ 사무기구 :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사무처 설치
 -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발의된 것으로 그 논의 경과에 따라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

다만,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로, 방사능 농도 및 열발생률의 정도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구분되는데²⁾,

[표 2] 방사성폐기물 구분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원자력 발전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의 핵연료물질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된 작업복, 장갑, 부품 등

개정안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맡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기존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게 되는데, 두 기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578호)

2) 「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제35조제4항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폐기물 중 그 방사능 농도 및 열발생률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위원회가 방사능 농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한다.

관이 각각 담당하는 방식이 방사성폐기물의 종합적·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산업부의 1개과가 담당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만을 분리·확대하는 것은 정책의 범위,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중앙행정기관 설치요건 등에 부합되지 않고, 산업부와의 업무 중복 및 정부조직의 비대화 문제도 우려되며, 이원화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종합적·체계적인 수행에도 한계가 예상된다는 입장임.

2. 우주청 신설(양정숙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소속의 우주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7조의2(우주청) ①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청을 둔다.</u> <u>② 우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u>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우주공간이 과학적 탐구나 상업적 이용대상에서 국방 등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이용대상으로 그 개발 목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주 정책을 조율하고 민·관·군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로 대통령 소속의 우주청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정책은 국가우주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수행되고 있는데,

우주개발이 과학기술, 국가안보, 민간산업 등과 관련되어 관
계 부처의 종합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주정책의 컨
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최근 「우주개발 진흥법」의 개정³⁾으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우주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국무총리와 장관급 공무원으로 각
각 격상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된 측면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3]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기본계 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u>15명 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기본계 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u>16명 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

3) 2021년 8월 10일 일부개정, 2021년 11월 11일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한다. ④ 위원장은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u>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u> 2.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생략)	한다. ④ 위원장은 <u>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u>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정보원장</u> 2.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u>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u> ⑥ (생략)

또한, 일반적으로 청(廳)은 행정각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업무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집행적 사무를 관장한다는 점⁴⁾에서, 우주청의 업무 성격과 소속이 적절한 것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과기정통부에서 분리됨에 따라 정보통신, R&D 등 타 과학기술 정책기능과의 연계성 및 업무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고, 우주청의 경우 청 설치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정책의 전문성·연속성 제고를 위해 전담조직 신설은 필요하나, 전담조직은 대외적으로 평화적 우주개발의 표명화를 위해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어 과기정통부에 우주개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적합하고, 현재 대통령 직속 조직은 실, 원, 위원회 조직만 설치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대통령 소속 우주청을 신설하는 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정부조직법」 상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경찰청·소방청 등이 있음.

3. 국가안전정보처 신설(김웅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내 치안정보 수집 등 정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조의3(국가안전정보처) ① 국내 치안정보 수집 등 정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둔다. ② 국가안전정보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2조의3(인사혁신처) (생략)	제22조의4(인사혁신처) (현행 제22조의3과 같음)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내 치안정보 수집 등 정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임.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⁵⁾의 내용에 따르면,

경찰과 해양경찰이 수행하는 직무 중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정보처가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⁶⁾⁷⁾, 이는 특정 기관으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관 간 상호 견제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국가안전정보처의 신설 여부는 함께 발의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의 논의 경과에 따라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543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7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51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5호),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9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8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50호)

6)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3조(국가안전정보처의 직무) ① 국가안전정보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범죄 또는 치안 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국가 및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자료 수집

7) 나머지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래의 현행법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① 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해양경찰법」

제14조(직무) ③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현재 국무총리 소속 기관 중 국가보훈처만 처장과 차장이 모두 정무직이고,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에는 처장은 정무직이지만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신설되는 조직의 처장과 차장을 모두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표 4] 국무총리 소속 기관 비교

제22조의2(국가보훈처)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 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② 국가보훈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u>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u>
제22조의3(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u>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제23조(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u>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u>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법 제정 여부에 따라 국가안전정보처의 조직, 직무범위 등을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⁸⁾⁹⁾.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권리 및 인권 보호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권력기관 간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거쳐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한편, 경찰청의 경우 경찰의 정보활동은 위협 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법령에 따라 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의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해양경찰청은 해양 경쟁국들의 해양경찰 정보기능이 강화하는 추세이고, 해양안보, 국제범죄예방 등 해양경찰청의 정보기능의 특수성이 존재하며,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최근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완료했다는 점을 들어 기관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임.

8) 현행법은 대통령 소속의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과 법무부장관 소속의 검찰청,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9) 다만, 부·처·청의 조직·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개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정부조직관리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나, 권력기관의 권한과 책임 등을 감안한 예외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 (오기형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국내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기획재정부) ① ----- ----- ----- ----- ----- -----금융----- ----- ----- -----.
② ~ ⑩ (생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은 2008년 2월 이후로 기획재정부가 국제금융정책을, 금융위원회가 국내금융정책(감독정책 포함)을,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집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표 5] 현재 금융정책 관련 수행 체계

구분	주요기능	
기획재정부	국제금융	· 환율·외환시장 정책 · 국제수지·외환수급 · 국제금융 협력 · 외채·대외채권 관리 등
금융위원회	국내금융 (감독)	· 금융정책 및 감독정책 · 자본시장 관리·감독 · 금융기관 설립 등 인허가 · 금융소비자 보호 · 금감원 지도·감독·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집행	· 금융기관 검사·감독 (업무·재산상황 검사, 회계감리, 증권 불공 정거래 조사 등)

※ 외국환거래법은 기재부 소관, 다만 외국환 거래 취급기관 건전성 감독은
금융위(금융감독원에 위탁) 소관

※ 자료: 행정안전부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가 목적인 금융감독 기능을 모두 담당하면서 두 기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 금융정책 기능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수행함에 따라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며, 국내외 금융정책을 모두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통합하여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가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등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정부조직 측면에서 기획재정부의 권한 집중 및 비대화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금융정책이 경제정책의 하위 수단이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의 내용은 함께 발의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논의 경과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데¹⁰⁾, 심사 경과에 따라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제4호¹¹⁾의 수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6] 금융위원회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 ※ 제명 변경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
-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이관 / 금융위원회는 폐지
 -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원(무자본특수법인)이 수행

1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584호)

11)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 금감원 내에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 업무에 관한 심의·의결
- 증권선물위원회 : 자본시장 관리·감독 및 감시 등
- 금융소비자위원회 : 금융소비자 보호, 배상 등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우선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간 정책 협력체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국내금융정책을 어느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각각의 대안에 대한 충분한 비교·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중장기적 시각에서 신중히 검토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5. 농·어업통계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이관 (서삼석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사무를 통계청에서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9항).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기획재정부) ① ~ ⑧ (생략)	제27조(기획재정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⑨ -----통계(농업통계 및 어업통계를 제외한다)-----.
⑩ (생략)	⑩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2008년 정부 개편 시 농업통계에 관한 사무가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된 후, 현재까지 농업통계와 어업통계에 관한 사무를 통계청에서 관장하고 있음¹²⁾.

12)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전부개정 및 시행) 부칙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농림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농업통계에 관한 사무	통계청장
---------------------------	------

그런데, 최근 통계청의 농업통계에 대하여 통계청 이관 이후 그 종류가 줄고(26종→9종), 부정확하다는 지적¹³⁾과 함께, 농수산물의 특성상 그 생산과 관련된 통계에 대하여는 신속성·정확성이 요구되므로 관련 사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개정안은 통계청 소관 업무인 농업통계와 어업통계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각각 이관하여 통계 사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다만,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이므로 그 작성, 공표 등에서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2020 농림어업총조사¹⁴⁾ 결과에 따르면, 전체 농림어가 중 혼

13)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통계청은 효율적 통계 작성을 위하여 유사 통계를 통합·조정한 것으로 실제로 통계가 감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규 통계(2종)을 개발하였으며, 통계청의 농어업통계 조사 규모가 타 기관보다 크고, 실측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함.

14) 2020 농림어업총조사 개요

1. 조사연혁: 농업총조사('60년), 어업총조사('70년), 임업총조사('98년) 각각 시행하다가 2010년부터 농림어업총조사로 통합 실시
2. 법적근거: 통계법 제5조의3, 농림어업총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804호)
3. 조사기준 시점 : 2020년 12월 1일 0시 현재
4. 조사대상: 전국 모든 농림어가와 행정리
5. 조사기간: 2020.12.1.~12.18./인터넷조사 11.23.~12.18.
6. 조사방법: 비대면 조사(인터넷, 전화, 회수용 종이조사표)와 대면조사인 방문면접 조사(CAPI, 종이조사표)
7. 조사표(4종): 농림업, 어업(해수면, 내수면), 지역조사
8. 조사항목: 4종 조사표, 127개 항목
9. 운영체계: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실시기관)
10. 동원인력: 6만명 내외(공무원 및 조사요원 2만명, 행정리 이장 3만7천명 포함)

※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합 경영가구는 전체의 11% 해당하고¹⁵⁾, 특히 어가의 경우에는 전체의 44.4%가 혼합 경영가구에 해당한다는 점¹⁶⁾에서 두 기관이 각각 농업통계와 어업통계를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장기간 농어업 관련 통계사무를 담당해 온 통계청에서 업무를 재이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 등을 감안할 때, 우선 관계부처 간 협력 강화 및 통계조사 기업의 과학화·선진화를 통해 정확성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또한, 통계청은 통계인프라, 전문성, 품질관리 등 통계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고, 정책수단으로 이용 우려를 방지할 수 있는 독립적인 통계전문기관인 통계청에서 계속 관장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농식품부와 통계청의 협업을 통해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해양수산부는 개별 부처가 독립하여 수행할

15) 단일 가구 948천가구(농가 918천가구, 임가 5천가구, 어가 25천가구), 혼합 가구 118천가구(농·임가 97천가구, 농·어가 19천가구, 농·림·어가 1천가구)

16) 전체 45천가구 중 25천가구가 단일 어가이고, 농·어가 혼합은 19천가구, 농·림·어가 혼합은 1천가구임.

경우 인력·재원의 중복 투입 및 부처간 통계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 부처 협의 강화, 통계항목 공동 발굴, 통계 정합성 관계부처 공동 검증 등의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

농어업통계의 통계청 이관 후 변동 현황 (통계청 자료)

구분	이관 전(26종)	이관 후(15종)
계속(8종) -농업: 6종 -어업: 2종	▲농업면적조사, ▲농작물생산조사, ▲가축동향조사, ▲농가판매및구입 가격조사, ▲산지쌀값조사, ▲양곡소비량조사, ▲어가경제조사, ▲어업 생산동향조사	
통합 (11종→5종) -농업: 7종→4종 -어업: 4종→3종	▲농업총조사, ▲과수실태조사, ▲어업총조사 (임업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 ▲축산물생산비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지임대차조사	▲농가경제조사
	▲어류양식현황조사, ▲어류양식생산비조사	▲어류양식동향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	▲농림어업조사
대체·조정 (7종) -농업: 7종→'0'	▲농업경영체실태조사 ^(미승인) ▲농업경영인력변동실태조사 ^(1회성) ▲농업법인사업체조사 ^(이관)	▲농업경영체등록자료로 대체 ('농업법인조사'로 명칭변경, 농식품부)
	▲농업농촌동향모니터링조사 ^(1회성) ▲친환경농산물생산유통실태조사 ^(1회성)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
	▲농어촌주민의삶의질만족도등조사 ^(통합이관)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통합이관)	농어업인등에대한복지실태조사 (농진청)
신규(2종)	-	▲귀농어·귀촌인 통계(2013) ▲북한벼재배면적조사(2020)

6. 행정안전부장관의 당적 보유 금지(전주혜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된 다음 날부터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행정안전부) ①·② (생략) <u><신 설></u> ③ ~ ⑧ (생략)	제34조(행정안전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행정안전부장관은 임명된 다음 날부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u> ④ ~ ⑨ (현행 제3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견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국가공무원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점은 「국가공무원법」에 천명된 의무¹⁷⁾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 한하여 당직 보유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정당 가입 금지 등 정치 운동의 금지 의무 조항 적용을 배제¹⁸⁾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정부조직법」의 목적은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고

17)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8)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3조(적용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 원·부·처의 차관.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조직하며 그 기관의 권한과 직무 범위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 공무원의 당직 보유에 관하여는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¹⁹⁾와 「국가공무원법」 및 하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더라도 이를 「정부조직법」에 반영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350

19)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